
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5. 3.>

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, 부착 면제,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

(제17조제5항 관련)

1.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

| 부착대상 배출시설 | 측정 항목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-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 |
| 나. 석유제품 제조시설 1) 가열시설 - 가열용량이 시간당 2,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2) 촉매 재생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 |
| 3)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황산화물 |
| 4)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-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 |
| 다.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) 가열시설 - 가열용량이 시간당 2,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2) 촉매 재생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 |
| 3)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황산화물 |
| 4)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-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 |
| 라.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) 황산 제조시설(황연소, 비철금속제련, 중질유분해시설) | 황산화물 |

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2)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</p> <p>가) 인산 제조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나) 불소화합물 제조设施建设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다)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3) 인광석 소성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4)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먼지, 불화수소, 질소산화물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마. 무기안료·염료·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| |
|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마.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| |
| 1) 화학비료 제조시설 | |
| 가) 질소질비료(요소를 포함한다) 제조시설 | 먼지, 암모니아 |
|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
| 나) 복합비료 제조시설 | 먼지, 암모니아, 불화수소 |
|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
| 2)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| |
|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질소산화물 |
| 3)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
| 사. 의약품 제조시설 | |
|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|

|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황산화물 |
| 아.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자. 화학섬유 제조시설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차.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카. 합성고무,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용융·용해시설,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타.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[재생(再生)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] 1) 유리(유리섬유를 포함한다) 제조 용융·용해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트(pot)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) 산처리시설(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(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.5 퍼센트 이하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 염화수소 |
| 파. 도자기·요업(窯業) 제품 제조시설[재생(再生)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] 소성시설 및 용융·용해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하. 시멘트·석회·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| |

| | |
|--|---|
| 1)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(소성로만 해당한다), 염화수소(폐합성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) 먼지, 질소산화물 |
| 2)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 |
| 거.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(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) 1) 소성시설 및 용융·용해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2)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 |
| 너.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·용해시설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더.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) 전기로(아크로만 해당한다)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 |
| 2) 소결로(燒結爐)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3) 가열로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4) 용광로, 용선로, 전로, 용융·용해로 또는 배소로(焙燒爐)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(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한다) |
| 5) 산처리시설(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 | 염화수소 |

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6) 주물사(鑄物砂) 처리시설(연속식만 해당한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먼지 |
| 라. 조립금속제품 · 기계 · 기기 · 장비 · 운송장비 · 가구 제조시설 | | |
| 1) 전기로(아크로만 해당한다) | | 먼지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 |
| 2) 가열로 |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 |
| 3) 전로, 용융 · 용해로 | | 먼지, 황산화물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 |
| 4) 산처리시설(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 | | 염화수소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 |
| 5) 주물사(鑄物砂) 처리시설(연속식만 해당한다) | | 먼지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 |
| 6)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(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) | | 염화수소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| | |
| 며. 발전시설(수력,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,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) | | |
| 1) 발전시설 | | |
| 가)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| | 먼지, 질소산화물,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중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| | 황산화물 |
| 나) 기체연료 사용시설 | | 질소산화물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중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| | |
| 2) 발전용 내연기관 | | |

| | |
|--|--|
| <p>가)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용량 5,000킬로와트 이상 <p>나) 기체연료 사용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용량 5,000킬로와트 이상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|
| <p>버. 폐수 · 폐기물 · 폐가스소각시설(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,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)</p> | |
| <p>1)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(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각용량이 시간당 0.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<p>2) 생활폐기물 소각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<p>3) 폐가스 소각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4) 의료폐기물 소각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각용량이 시간당 0.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<p>5) 폐수 소각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각용량이 시간당 0.2톤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염화수소, 일산화탄 소, 황산화물 먼지, 질소산화물, 염화수소, 일산화탄 소 질소산화물, 일산화 탄소, 황산화물 먼지, 질소산화물, 염화수소, 일산화탄 소 먼지,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 |
| <p>서. 보일러(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)</p> <p>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,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</p>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(나무를 연 료로 사용 하는 시 설은 제외한다) |
| <p>어.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</p> <p>고형(固形)연료제품 사용시설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. 다만,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. | 먼지, 질소산화물, 염화수소, 일산화탄 소 |
| <p>저. 입자상물질,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(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)</p> | |
| <p>1)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(연속식만 해당한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,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<p>2) 증발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,000표준세제곱미터 | 먼지 먼지 |

| | |
|--|-----------------|
| 이상인 시설 | |
| 처.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(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)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,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|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|

비고

-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,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.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(0°C , 1기압)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.
-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 수집기(FEP)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증착·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“연속식” 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.
 - 주물사처리시설·탈사시설·탈정시설의 “연속식” 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.
 -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.
 -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.
-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

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.

 -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(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(발전시설은 제외한다)

- 다.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
(발전시설은 제외하며,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)
- 라.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
- 마.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
- 바.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. 다만,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에 한한다.
- 사.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
비고: 각 목의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
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,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
에 측정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.

3.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

- 가.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.
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(이하 "사업장 종규모변경"이라 한다)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(이하 "종규모 변경일"이라 한다)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다.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자동
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.
- 1)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(이하 "기본부과기준"이라 한다)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.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.
 - 2)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.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(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)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.